

고용보험 실업급여란?

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

-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.
-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(실업인정)하고 지급합니다.
-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

(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)



▶ 상세설명

구분	요건								
구직급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(비자발적으로 이직), 적극적인 재취업활동(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)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※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※ 자발적 이직하거나,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. (일용) 수급자격신청일 미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(일용) 최종 이직일 미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								
상병급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· 부상 ·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7일이상의 질병 ·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								
훈련연장급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·경력 등을 고려할 때,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								
개별연장급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, 재산상황,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								
특별연장급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								
취업촉진수당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조기재취업수당</td>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(자영업을 영위할 것)될 것 ※'14.1.1.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/20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(사업을 영위한)된 경우여야 함 (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) </td></tr> <tr> <td>직업능력개발수당</td>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</td></tr> <tr> <td>광역구직활동비</td>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</td></tr> <tr> <td>이주비</td>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</td></tr> </table>	조기재취업수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(자영업을 영위할 것)될 것 ※'14.1.1.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/20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(사업을 영위한)된 경우여야 함 (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) 	직업능력개발수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	광역구직활동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	이주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
조기재취업수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(자영업을 영위할 것)될 것 ※'14.1.1.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/20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(사업을 영위한)된 경우여야 함 (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) 								
직업능력개발수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								
광역구직활동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								
이주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								